

(주)한화 리스크 관리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한화(이하 ‘회사’)의 통합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한 환경과 체계, 그리고 이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회사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회사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이해관계자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 회사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리스크를 다루며 이미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는 관계법령과 정관 및 내부 규정 등에 따른다.
- ‘리스크 관리’에 관하여 관계법령과 정관 및 내부 규정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리스크’란 회사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불확실성이 회사의 자기자본, 수익, 사업기회, 자금 조달, 조직운영, 평판 등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말하고, 리스크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 재무 리스크:** 회계처리,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세금의 신고와 납부, 금리, 유동성, 환율, 신용등급 등 회사의 회계·세무·금융·재무·공시 정책을 포함하여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재무적인 위험을 말한다.
 - 비재무 리스크:** 환경, 안전, 보건, 사회공헌, 공급망, 상생협력, 인사, 인재경영, 지배구조, 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 사업전략·운영, 평판 등과 이에 대한 공시를 포함하여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비재무적인 위험을 말한다.
- ‘리스크 관리’란 리스크 관리 기본원칙에 따라 설계된 리스크 관리 체계를 통하여 리스크 관리 절차를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 ‘리스크 식별’이란 사전적으로 리스크 인자의 유형과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발생 가능

한 리스크를 총체적으로 확인하고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4. ‘리스크 분석’이란 다양한 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리스크 식별 단계에서 파악된 리스크 인자의 결과적 중요도를 분석하는 과정으로 리스크의 발생 확률, 발생 규모, 리스크 변수 개별적 영향 또는 종합적 파급 효과 등을 계량적 또는 비계량적으로 측정 ·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리스크 전가’란 보험계약, 이행보증 또는 그 밖의 보증 및 보장 등을 통하여 리스크의 잠재적 결과를 다른 기관에 부담시키거나 공유하는 방법을 말한다.

6. ‘리스크 회피’란 리스크에 관한 노출 자체를 회피하여 발생될 수 있는 잠재적 손실을 제거하는 것으로서 사업 계획 및 전략의 변경, 일정 연장, 사업의 범위 축소 또는 미시행 등과 같은 조치를 말한다.

7. ‘리스크 축소’란 사전에 행하는 예방적 조치로서 다양한 기법을 사용하여 리스크의 발생 가능성을 낮추어 잠재적 리스크에 관한 노출 정도를 축소하는 방법을 말한다.

8. ‘리스크 수용’이란 리스크를 전가하거나 회피할 수 없어 수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조(제정 및 개정) 본 규정의 제정, 개정, 폐지는 대표이사 승인에 의한다.

제2장 리스크 관리 환경

제5조(리스크 관리 문화) 회사는 회사 전체에 견고한 리스크 관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책임이 있고, 이를 위해 대표이사는 임직원을 포함한 회사 이해관계자의 리스크 관리에 대한 철학을 바탕으로 본 규정을 제정 및 개정함으로써 리스크 관리 기본원칙을 정하는 등의 리스크 관리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제6조(리스크 관리 기본원칙) 회사의 리스크 관리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1. ‘리스크 관리’의 목표는 회사 이해관계자의 가치 증대이다.

2. ‘리스크 관리’는 전사적인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3. ‘리스크 관리’는 회사의 모든 업무를 계획하는 단계에서 사전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4. ‘리스크 관리’는 리스크 관리 조직에 의해 체계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제3장 리스크 관리 체계

제7조(리스크 관리 조직) 리스크 관리 조직은 ‘총괄관리자’, ‘운영 조직’, ‘실행 조직’으로 구분하며 각 조직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총괄관리자: 대표이사

2. 운영 조직: 재무실, 건설부문 기획실(공시, 내부회계운영), ESG협의체

3. 실행 조직: 회사에 소속된 가장 작은 단위의 공식적인 조직

제8조(리스크 관리 조직의 변경) ‘리스크 관리 조직’의 명칭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조직의 역할 등을 종합하여 기존 ‘리스크 관리 조직’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직을 이 규정에 따른 ‘리스크 관리 조직’으로 본다.

제9조(총괄관리자의 업무) 대표이사는 ‘총괄관리자’로서 회사의 리스크에 관해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관한 사전 검토, 관련 의사결정 및 이를 관리하기 위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등 회사의 ‘리스크 관리’ 업무는 대표이사가 총괄한다.

2. 대표이사는 회사의 ‘리스크’ 중 이사회 및 소위원회 규정에 따라 이사회 및 관련 소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하는 주요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 및 관련 소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0조(운영 조직의 업무) ‘운영 조직’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재무실과 건설부문 기획실(공시, 내부회계운영)은 ‘운영 조직’으로서 ‘총괄관리자’를 보좌하여 회사의 ‘재무 리스크’에 관해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 가. 재무 리스크에 대한 사전 검토 사항 등 보고
- 나. 재무 리스크에 대한 ‘총괄관리자’의 지시사항 이행 및 ‘실행 조직’에 대한 감독·지시·지원
- 다. 제9조 제2항 소정 주요 사항 중 재무 리스크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보고

2. ESG협의체는 ‘운영 조직’으로서 ‘총괄관리자’를 보좌하여 회사의 ‘비재무 리스크’에 관해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 가. 비재무 리스크에 대한 사전 검토 사항 등 보고
- 나. 비재무 리스크에 대한 ‘총괄관리자’의 지시사항 이행 및 ‘실행 조직’에 대한 감독·지시·지원
- 다. 제9조 제2항 소정 주요 사항 중 비재무 리스크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 및 ESG위원회에 보고

3. 재무실과 건설부문 기획실(공시, 내부회계운영) 및 ESG협의체는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제11조(실행 조직의 업무) ‘실행 조직’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실행 조직과 관련된 ‘리스크’에 대한 사전 검토 사항 등 보고
2. 해당 실행 조직과 관련된 ‘리스크’에 대한 ‘총괄관리자’ 및 ‘운영 조직’의 지시사항 이행

제12조(기타 사항) 제9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사항’에 대한 ‘리스크 관리 조직’은 제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을 따른다.

1. ‘기타 사항’에 대한 ‘리스크 관리’는 ‘기타 사항’과 관련된 위임전결규정 상 최종 전결권자가 ‘총괄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2. ‘기타 사항’에 대한 ‘리스크 관리’에 대하여는 해당 위임전결규정 상 차하위 전결권자가 ‘운영 조직’의 업무를 수행하며, 차하위 전결권자가 없는 경우 기안자가 ‘운영 조직’의

업무를 수행한다.

3. ‘기타 사항’에 대한 ‘리스크 관리’에 대하여는 해당 위임전결규정 상 기안자가 ‘실행 조직’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4장 리스크 관리 절차

제13조(사전 검토) 회사의 모든 리스크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전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실행 조직’은 (서식1)을 참고하여 ‘리스크 평가표’를 작성하여 ‘운영 조직’에 보고한다.

1. 리스크 식별

가. 리스크 인자의 유형 파악

나. 리스크 인자의 특성 파악

2. 리스크 분석

가. 리스크의 발생 확률

나. 리스크의 발생 규모

다. 리스크 변수 개별적 영향 또는 종합적 파급 효과 등에 대한 계량적 평가

라. 리스크 변수 개별적 영향 또는 종합적 파급 효과 등에 대한 비계량적 평가

제14조(의사결정)

1. ‘운영 조직’은 제13조(사전 검토)에 따라 검토된 리스크에 대해 ‘리스크 전가·회피·축소·수용’ 중에서 회사의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총괄관리자’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때 (서식2)를 참고하여 ‘리스크 대응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총괄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보고 된 회사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재무 리스크’ 및 ‘비 재무 리스크’를 조정, 통합 등 총괄하여 의사결정한다.

제15조(의사결정의 후속조치) 제14조(의사결정)에 따라 결정된 내용 등에 대하여 ‘실행 조직’은 ‘운영 조직’에게, 그리고 ‘운영 조직’은 ‘총괄관리자’에게 사후보고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이때 (서식3)을 참고하여 ‘리스크 대응 결과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16조(주기) ‘리스크 관리 절차’에 의한 ‘사전 검토’ 및 ‘의사결정’ 등의 주기는 다음과 같다.

1. 정기: 매년 12월에 연 1회 주기적으로 시행한다.

2. 수시: 새로운 법이나 제도의 시행, 신규 사업, 신규 거래처 등 리스크의 식별 및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수시로 시행한다.

부칙 (2023.05.30.)

이 규정은 2023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서식 1】

리스크 평가표

1. 이행 조직명:

2. 업무명:

3. 세부내역

가. 리스크 유형: (※ 제3조 제1항을 참고하여 자세히 파악)

나. 리스크 특성: (※ 개별 위험, 복합 위험 등 리스크 고유의 특성 기재)

다. 리스크 평가

계량적 요인	비계량적 요인	종합 판단
※(발생확률) X (발생 규모)의 합 (발생확률)의 합은 반드시 1이 되어야 함.	※(예) 평판 하락, 불매 운동, 시위,...	※ 계량적 요인과 비계량적 요인을 바탕으로, 해당 리스크에 대한 보고 및 대응의 수준을 판단. (예) 100억원의 과태료와 부정적 여론 형성의 리스크가 있으므로, 이사회 보고 사항으로 판단됨.

【서식 2】

리스크 대응 계획서

1. 이행 조직명:

2. 업무명:

3. 세부내역

가. 리스크 대응 계획

의사결정 사항	대응 계획
※ 전가/회피/축소/수용 중에서 선택	※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술

나. 기타 고려할 사항

【서식 3】

리스크 대응 결과서

1. 이행 조직명:

2. 업무명:

3. 세부내역

가. 리스크 대응 결과

의사결정 사항	대응 결과
※ 전가/회피/축소/수용 중에서 선택	※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술

나. 기타 기록할 사항